

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

※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※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실명확인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	한글	주민등록번호	사진 (3.5cm×4.5cm) 또는 사진인쇄
		한자		
		영문 (성) (이름)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
	전자우편주소	국적		
주소	군복무	① 기간 ~	구분 []미필 []면제 []기타	

② 직무분야 ※ ②란 직무분야의 예: 토목, 건축, 기계, 안전관리,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.

③ 학력	재학기간	졸업 학교명	학과(전공)	학위
	. . . ~			
	. . . ~			

④ 국가 기술자격	합격일	종목 및 등급	등록번호
		
		

⑤ 근무처	회사명	근무기간	회사명	근무기간
		. . . ~ ~
		. . . ~ ~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본인)

(서명 또는 인)
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접수 담당자 확인사항	수수료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[발주자,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(대표자)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]졸업증명서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교육·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·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,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)증명사진(3.5cm×4.5cm) 1장(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	<p>다음 각 목의 서류(신고·변경 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

유의사항

- 신청인(본인)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

대리인	성명	생년월일	연락처
	(서명 또는 인)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[]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, [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[]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[]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(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1.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.
2. ②란의 직무 분야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.(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)
3.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.
4.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.
5.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.